더샵 송도아크베이(송도 B3BL)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 **국토교통부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과 관련한 서류접수 방법을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 합니다 (※견본주택 방문접수 불가)**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방문접수(견본주택)도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자격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여 신청해 받은 불이익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개요 안내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5번지 (B3BL)
■ **공급규모 :** 아파트 총 775세대 / 지하4층 ~ 지상49층, 3개 동 (B3BL)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총25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 공급세대수의 10%범위 내 공급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등은 미정이며, 추후 모집승인 완료시 모집공고 참조]**
- 입주자집공고참조 2021년 4월 8일(목) 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구분	더샵 송도아크베이(B3BL) 경제자유 특별공급 (공급 세대수의 10%범위 내)									
주택형	84A	84B	98	112	121A	121B	155	168	179	계
총 세대수	127	128	128	127	128	128	3	3	3	775
외국인 임대 (준공 이후 외국인대상 공급)	40	41	34	28	12	12	-	-	-	167
금번 공급세대수	87	87	94	99	116	116	3	3	3	608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배정 (당첨 확정)	8	8	9	-	-	-	-	-	-	25
예비자	40	40	45	-	-	-	-	-	-	125

Ⅱ 공급일정 안내

구 분		일 정 (예정)	비 고
특별공급 사전접수 (등기우편 접수)		'21년 3월 15일(월) ~ 17일(수) [3일간]	* 우편 접수 주소 **(※등기 발송 필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01(송도동37-2)(더샵 송도아크베이 견본주택)** * **우편 소인 날짜 기준 : '21년 3월 17일(수) 우편 소인까지 인정** *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미비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미비기준 : 서류 미비, 인장 누락, 서명 누락 등**
예정	대상자 선정 결과	'21년 4월 14일(수)	* 분양 홈페이지 (www.더샵송도아크베이.com) **및** 개별SMS통보 예정
	입주자모집공고	'21년 4월 8일 (목)	* 일간신문 및 분양 홈페이지 (www.더샵송도아크베이.com)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21년 4월 9일 (금)	* 분양 홈페이지 (www.더샵송도아크베이.com)
	특별공급 청약	'21년 4월 19일 (월)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08:00~17:30)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1년 4월 27일 (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계약 체결	'21년 5월 10일(월)~ 14일(금) [5일간]	* 장소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송도동37-2) * 시간 : 10:00~17:30 * 모집공고 및 분양 홈페이지 참고(www.더샵송도아크베이.com) * 시간별 예약 가능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위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일체는 해당 기간 내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결과 확인 후 당첨 확정자 또는 예비자가 된 경우 한국부동산원'청약Home'(www.applyhome.co.kr)으로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Ⅲ 특별공급 사전접수 구비서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사전접수 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재직회사	재직회사 발급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자등록증 1부	재직회사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사업자등록증 하단부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여부 : 여(V) 부( ) 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도 함께 제출**
	○		재직증명서 1부	재직회사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재직기간 명시(필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인사기록카드 1부	재직회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연속하여 재직한 기간 확인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건강보험관리공단 팩스 또는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이상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		주택특별 공급신청서	-	소속업체 인감 날인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분양 홈페이지 참고)
	○		무주택서약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분양 홈페이지 참고)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분양 홈페이지 참고)
	○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이름, 청약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일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부동산원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 / 이용시간 08:00 ~ 17:30)** **※ 모집공고 예정일 기준 주택형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가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서명)	본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날인필수
내국인	○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표)초본 1통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전체포함 (상세발급)
		○	기타	-	접수를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본인	또는 영주증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본인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본인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본인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회사	법인신청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21.4.8.(목) (예정)** 3개월 이전까지 발행분(세대 구성원 변동 시 변동된 날 기준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접수가능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 및 미기재,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청약 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분양 홈페이지(www.더샵아크베이.com)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붙 임 1.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2. 무주택 서약서
3.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Ⅳ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4.8.(목)(예정)** 현재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함.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 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약부금 (전용85㎡ 이상 신청 시) 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이전까지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 시 기존 통장으로 재변경이 불가합니다.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4.8.(목)(예정)** 입니다.
※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 합니다.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및 제28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 대상자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 방법**

1.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대상자는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고,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함.
2.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적용기준 나목을 적용 합니다. 본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름.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 확정자 및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청약 미신청시 동호수 배정 및 계약불가)
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홈페이지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까지 게시하고 특별공급 대상자 및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결과를 통보함.

VI 유의사항 안내

■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우편 접수'로 변경 됩니다. 견본 주택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일체는 해당 기간 내 **우편 접수(등기)**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외 타 지역 사업장 에서 근무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한 경우,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이 된 경우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구비서류 중 **재직회사 서류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사업주체에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주택소유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청약자 본인에 한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 2순위) 중복 청약을 허용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자동 무효처리 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모두 가능하나, 특별공급(경제자유구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청약 신청은 1세대 1건만 청약 가능**하므로,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적용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 부부가 각각 경제자유구역 장기근속으로 특별공급 당첨확정자가 되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내 1인만 청약가능)
(ex 남편 : 경제자유구역 당첨확정자로 청약, 부인 : 다자녀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확정자, 예비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된 타입 외 다른 타입 청약 시 당첨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전매제한 기간 내 전출 또는 퇴직,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공급 받은 주택은 계약취소가 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재공급 하게 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시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미제출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타 지역 발령(인천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미충족 시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1) **종전 기업의 근무기간과 현재 기업의 근무 기간 합산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A)에서 1년근무, 이직하여 현재 동 구역 외국인 투자기업(B)에서 10개월 근무
→ (B)근무 기간만 인정

예2) **타지역의 지사로 발령받은 근무자는 신청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또는 **재직 기간 삭감**
: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A)에서 10년근무, 3개월전 타지역 지사로 파견, 발령 받아 근무한 경우
→ 신청불가
: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A)에서 10년근무, 타지역 지사로 파견갔다가 2년전 복귀
→ 2년 인정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 1855-1331 홈페이지 : www.더샵송도아크베이.com

붙임.1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소속업체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연락처	자택 : ( ) -	휴대폰 :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부서		직책 및 직위	
소재지주소			☎
근무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년 월

2. 가족사항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구성 전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함.

3.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

구역 및 지구	위 치	신청주택형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5번지 (B3BL)	□84A □84B □98

(※한가지의 주택형만 "V"표시)

4. 첨부서류

공통서류	확인	내국인	확인	외국인, 재외국민	확인
1.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대조 필)**	☐	1.신분증 **(사본)**	☐	1.외국인등록증(외국인)	☐
2.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 필)**	☐	2.주민등록표등본(본인)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2.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
3.법인인감증명서 **(법인신청의 경우)**	☐	3.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3.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재외국민)	☐
4.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신청의 경우)**	☐	4.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에 한함)**	☐	4.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국민)	☐
5.재직증명서 **(소속업체 사용인감 날인)**	☐	5.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6.인사기록카드 **(원본대조 필)**	☐	6.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번호포함 전체발급)**					
8.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속업체 사용인감 날인)**	☐				
9.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소속업체 사용인감 날인)**	☐				
10.무주택서약서 **(신청인 본인 인감 날인)**	☐				
11.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날인)	☐				
12.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 이용시간 08:00 ~ 17:30)**	☐				
13.기타서류 (특별공급 접수를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서류)	☐				

※ 확인란 "□" 칸에 "V"로 표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 합니다.

2021 년 월 일

세대주와의관계 : _____ 신 청 인 : 신청인본인성명 (인감날인)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 속 업 체 : 소속업체명 (소속업체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붙임.2

무주택 서약서

신청아파트	더샵 송도아크베이 (송도 B3BL)		
성 명		신청주택형	□84A □84B □98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상기 본인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 당첨사실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등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다른 분양주택 청약 제한) 및 동·호 배정을 받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확 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21. 4. 8.예정)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소형·저가 주택은 일반 공급에서 해당하며 특별공급 신청 시 유주택임. ※ '2018.12.11. 이후 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됨.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따름.(특별공급 안내문참조)	(신청인 인감날인)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	(신청인 인감날인)

2021년 월 일

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 시 신청인 : 신청자 본인 성명 (신청인인감날인)

대리 신청 시 신청인 : 대리인 성명 (대리인인감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사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활용 미동의 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연락처			
주 소	시 구 동		

▣ 개인정보 수집・활용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주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포스코건설, (주)엔티파크
개인정보의 수집・활용항목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한 개인정보 및 제출된 서류 일체
개인정보의 수입・활용목적	“더샵 송도아크베이 (송도 B3BL)”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분양완료 후 30일 이내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입・활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하실 경우 분양정보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성 명 : 신청자본인성명 (본인인감날인)